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00

발의연월일: 2022. 9. 2.

발 의 자: 박대수 · 구자근 · 김선교

김희곤 · 김용판 · 송석준

안병길 · 이주화 · 임이자

정찬민 · 조명희 · 조은희

지성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,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, 납부기한 전 징수,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고형연료제품 수입자·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 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·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,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 (안 제17조의2).
- 나.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, 납부기한 전 징수,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부·징수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 19조).
- 다.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 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의8).
- 라. 금지명령을 받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·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 징금 체납 시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·징수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25조의11).
- 마.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 청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37조).

법률 제 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도운영의 효율성, 회수·재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제1항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2.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제19조에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⑧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있다.
 -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
 - 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
 - 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

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1. 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2.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. 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5. 경매가 개시된 경우
- 6. 법인이 해산한 경우
- 7.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①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
- ①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
- ②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5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25조의11제2항 중 "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"를 "체납처분의 예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1. 납세자 인적사항
- 2. 사용목적
- 3. 사업장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재활용의무이행 인증)	제17조의2(재활용의무이행 인증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
	간은 제도운영의 효율성, 회수
	•재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
	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u><신 설></u>	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
	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
	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	1. 제1항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
	납부하지 않은 경우
	2.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
	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
	<u>된 경우</u>
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	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
	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	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
	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
	수를 유예할 수 있다.
	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

<신 설>

 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

 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

 경우

- 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
- 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 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- 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1. 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 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2.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. 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 지처분을 받은 경우
- 5. 경매가 개시된 경우
- 6. 법인이 해산한 경우
- 7.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 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25조의8(고형연료제품 제조시 제25조의8(고형연료제품 제조시 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 경우

⑩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 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 을 고지하여야 한다.

①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 계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①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체 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것 외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 한다.

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

- 제25조의11(금지명령을 갈음한 과 제25조의11(금지명령을 갈음한 과 징금) ① (생략)
 -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 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 수 · 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 입자 ·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 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③ (생략)
- 제37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② 제37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② (생 략)

<신 설>

징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체납처분의 예 또는
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
<u>수 등에 관한 법률」</u>
③ (현행과 같음)

- (혂행과 같음)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 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1. 납세자 인적사항
 - 2. 사용목적
 - 3. 사업장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